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15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재산세 787,470원, 지방교육세 8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경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redacted]구 B 답 2,684㎡외 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547,2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2

지방교육세 360,1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09. 3. 23.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던바, 종전 지목인 답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2013년도 과세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차액분 재산세 767,470원, 지방교육세 87,140원 합계 854,61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창원시 지방세 이의신청을 거쳐, 경상남도에 2017. 12. 12.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는 부과납세 방식에 따라 조세채권이 확정되는데, 원고가 피고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정부종합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위칙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등에 어긋나 위헌인바, 위헌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2

이 사건 조항인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조항은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추후에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한 점, 과소징수된 재산세를 추가징수하기 위한 사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점, ②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조항은 재산세의 누락, 위법, 착오 등의 경우로서 수시부과할 수 있는 원인을 법률로서 특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점, 설령 누락, 위법, 착오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시부과의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특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소납세자에 대한 추가징수를 제한함으로써 올바르게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 점, ③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조항은 납세자의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만 누락, 위법, 착오 등 과거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시정할 뿐인바, 당초 존재했어야 할 올바른 조세채권관계, 즉 담세력에 걸맞는 과세처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④ 법익의 균형성: 과거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재산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된 조세채권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2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합헌으로 보는 이상, 지목을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특정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부과납세방식에 따라 그릇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추후 잘못된 과세처분임이 밝혀지더라도 추가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